

2018-12호

의 정 정 보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Contents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 대구광역시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4
- 인천광역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7
-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0
- 경상남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15
-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 20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24
- 대구광역시 동구 읍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6
- 광주광역시 동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등에 관한 조례 31
-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32
- 춘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37
- 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43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내포신도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의정토론회 50
- 충남 중증장애아동 재활치료 확대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 ... 59

타 시도 의회 주요동향

- 서울시의회, 제5기 정책위원회 첫 연구발표회 및 전체회의 개최 ... 70
- 부산시의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출범 71
- 대전시의회, 제7대 의회 의정백서 발간 72
- 울산시의회,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전달 73
- 세종시의회, 무상교복 재추진 시동 74
- 경기도의회,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에 성금 전달 75
- 강원도의회, 연탄배달 봉사료 이웃사랑 나눔 실천 76
- 전남도의회, 도시재생연구회, 전남형 도시재생 성공모델 개발 모색 ... 77
- 경남도의회, 성평등정책연구회 토론회 개최 78

최근 제개정 법령

-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80
- 관광진흥법 81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8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 치매관리법 86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87
- 영유아보육법 88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 등 관련 질의 90
- 경상남도 통영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 등 관련 질의 92
- 경상북도 경산시 「지방자치법」 제136조 등 관련 질의 95

최근 타 사·도 제·개정 조례

1.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8. 12. 10.] [대구광역시조례 제5186호, 2018. 12. 10., 제정]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새로운 혁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주요 정책 및 발전 방향에 대한 대구광역시장의 자문에 협조하는 대구광역시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주요내용

2조(설치·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미래비전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정 역점 시책에 대한 발전 방향 및 정책 자문
2. 혁신의제 발굴 및 혁신정책 대안 제시
3.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피드백 제시
4. 그 밖에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정책 발전을 위한 자문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0명 내외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별 검토사항에 대한 조정, 대외 소통 및 위원회 운영 관련 주요 자문을 위해 5명 내외의 총괄자문을 둔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정 각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연구원 등 종사자
2. 시정 각 분야별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3. 그 밖에 국내적, 국제적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아 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괄자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와 분야별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1. 민생경제 분과위원회
2. 포용복지 분과위원회
3. 공간혁신 분과위원회
4. 안심생활 분과위원회
5. 문화누리 분과위원회
6. 혁신소통 분과위원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분과위원회는 필요시 추가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분과위원회 간의 효율적인 의견 교환과 전체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위원회 위원장, 총괄자문, 각 분과위원장 등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임시회의는 시장, 시의 해당분야 실·국·본부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는 자문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회의 소집이 어려울 경우 전자우편, 서면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자료협조) 시의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들로부터 자료 또는 의견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상정 안건의 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2018. 12. 10.] [인천광역시조례 제6037호, 2018. 12. 10., 제정]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사·공단·출연기관에 근로자이사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통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간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며, 대시민 서비스를 증진시키는데 기여

주요내용

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공사 등”이란 인천광역시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출연기관을 말한다.
4. “근로자이사”란 공사 등의 소속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기관장이 임명하는 비상임이사를 말한다.
5. “기관장”이란 공사 등의 장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시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출연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대상기관) 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근로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사 등은 근로자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근로자 정원이 100명 미만인

등도 이사회 의결로 근로자이사를 둘 수 있다.

제5조(임명) ① 근로자이사는 지방공기업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과 공사 등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임명한다.

② 근로자이사의 임명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③ 근로자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소속 공사 등의 노동조합원

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근로자위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

제6조(자격) ① 근로자이사는 공사 등 소속 근로자 중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또는 노동조합이 추천한 인사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사 등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재직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이사가 될 수 없다. 임명시 또는 임명후에도 그에 해당하였음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60조제1항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3.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

4. 제5조제3항 각 호

제7조(정수) 공사 등에 두는 근로자이사의 수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근로자 정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해당기관의 정관으로 정하되, 근로자이사의 정수는 비상임이사(당연직이사를 제외한다)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공사 등 : 각각 근로자이사 2명

2.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공사 등 : 각각 근로자이사 1명

제8조(임기) 근로자이사의 임기는 관련 법령이나 조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 다만, 근로자이사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이사의 임기와 관계없이 근로자이사의 임기도 당연히 종료된다.

제9조(권한) ① 근로자이사는 관계법령 및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일반 비상임 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의 행사는 시민복리 증진 및 공익성이 우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책임 등) 근로자이사는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비상임이사에게 부과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1조(기관장의 책무) ① 기관장은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근로자이사를 다른 근로자와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하며, 근로자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근로자이사가 그 직을 상실한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② 근로자이사의 임명 및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 등 기본적인 편의 제공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 또는 기관장은 근로자이사가 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학습기회·훈련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학습기회·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 등의 정관 또는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⑤ 근로자이사의 이사회 출석 시간과 그 밖에 근로자이사로서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간 등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제12조(수당 등) ① 근로자이사로서의 직무수행에 따른 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근로자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 및 자료검토 등에 소요되는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당 등 지급 기준은 관련 법령 등에 따른다.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근로자이사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18. 12. 10.]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1213호, 2018. 12. 10., 전부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의 실현과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주요내용

2조(기본이념) 마을공동체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에 기반한 정보 공유 및 유대 강화를 토대로 하는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하여 문제의 해결을 추진한다.
3. 주민 및 마을의 역할을 인식하고,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참여주체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주체의 연계 및 조화를 지향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시 관내에 소재한 사업장·학교 등에서 근무하거나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마을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공익적 활동을 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이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마을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거나 마을 발전을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 및 사업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①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6조(마을공동체 기본계획)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마을공동체 기본현황 및 여건 분석
2.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방향 및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마을공동체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4.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의 재원조달 및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제11조제1항에 따른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24조에 따른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전담부서의 지정)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시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행정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협의회는 제8조에 따른 전담부서와 각종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 관련 담당 부서·기관의 실무자로 구성한다.

제10조(마을공동체의 구성·운영) ①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을 추진하려는 주민들은 마을공동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마을공동체의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사항은 마을공동체가 자체적으로 정한다.

③ 마을공동체는 주민 의견이 반영된 마을공동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활동 또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사업
2. 마을자원을 활용한 공동협력 활동
3.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사업
4.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관련된 교육·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5. 마을공동체 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연구·조사 활동
6.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및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단순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마을공동체 또는 대표자가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적 활동을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12조(사업 지원신청 등)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마을공동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사업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포상) ① 시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에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과 절차는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한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
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5조(재산 처분의 제한)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아 형성된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9 및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1조를 따른다.

제16조(설치 및 기능) ①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마을공동체의 발전방향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위원회(이하

“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5. 제24조에 따른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마을공동체업무 담당 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마을공동체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마을공동체 관련 유관 기관·단체의 대표
3. 마을공동체 활동에 전문성과 식견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16세 이상의 주민으로 시장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마을공동체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8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위원장의 직무 등)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2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 또는 공동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수당) ①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마을공동체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⑥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방법, 지도감독 및 위탁계약 해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25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의 기초조사·분석·평가·연구
3. 제10조제3항에 따른 마을공동체 사업계획의 수립·실행 지원
4.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및 민간단체 협력사업 거버넌스 구축 운영
5. 주민, 전문 인력(활동가), 공무원 등의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6. 마을공동체 관련 자문·박람회·세미나 및 국내·외 현장견학 등 지원
7.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에 의한 생산제품의 홍보·판매·디자인 등 지원
8. 마을 자원조사 및 유형별·지역별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9.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4.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2019. 1. 2.] [경상남도조례 제4503호, 2018. 12. 6., 일부개정]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여 지능형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함

주요내용

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능형 로봇”이란 외부 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2. “로봇랜드”란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조성 지역으로서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각종 지능형 로봇이 활용되는 시설과 그 밖에 부대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말한다.
3. “서비스 로봇”이란 인간의 생활환경에서 개인을 대상으로 제반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서비스 로봇과 공공의 이익 및 특수 목적에 전문화된 작업을 수행하는 전문서비스 로봇을 말한다. <신설 2018.6.28.>

제3조(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방향 및 목표
2.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의 촉진방안
3.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기반조성 및 시설구축에 관한 사항
4. 로봇랜드의 조성·관리·운영(이하 “조성 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경상남도 지능형로봇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예산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3조의 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관련 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로봇 경진대회, 토론회, 발표회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설치)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도지사 자문을 위하여 경상남도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제3조의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로봇랜드 조성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03.24, 2018.8.2〉

③ 당연직 위원은 산업혁신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0.11.4, 2011.12.29, 2013.1.31, 2013.3.28, 2015.7.2, 2017.1.26, 2018.12.6〉

1. 지능형 로봇 업무관련 도의회의 상임위원회 위원
2. 지능형 로봇관련 국내외 대학의 부교수 이상인 사람
3. 지능형 로봇관련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사람
4. 지능형 로봇관련 기업·단체의 이사급 이상인 사람
5. 로봇랜드 조성·관리·운영 관련 기업·단체의 이사급 이상인 사람
6. 그 밖에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능형 로봇 관련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1.03.24〉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12조(설립) 로봇랜드 조성·관리·운영 및 로봇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남로봇랜드재단 (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4.12.26, 2018.6.28>

제13조(법인격)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1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로봇랜드 조성·관리 및 운영 등
2. 로봇랜드·서비스 로봇 관련 연구 및 정책 개발 <개정 2018.6.28>
3. 로봇랜드·서비스 로봇 콘텐츠 개발 및 활성화 관련 업무 <개정 2018.6.28>
4. 로봇랜드·로봇산업 관련 전시·홍보 및 인력양성 사업 <개정 2018.6.28>
5. 로봇랜드·로봇산업 관련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 및 용역사업 <개정 2018.6.28>
6. 그 밖에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전문개정 2014.12.26>

제1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 범위 및 내용
8. 예산과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임원) 재단에는 이사장, 부이사장, 원장, 이사, 감사를 두며, 임원의종류, 정수 및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7조(이사회) ① 재단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원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장은 도지사가 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 소집, 의결정족수 및 의결사항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8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 따라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10.10>

제19조(재원) ①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출연금 등으로 충당한다.

1. 경상남도 및 시·군의 출연금

2. 중앙정부의 보조금

3.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 후원인 등의 출연금

4. 그 밖에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도지사는 재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20조(운영) 재단은 재산과 경비를 출연한 경상남도 및 그 밖의 지방 자치단체간 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공동규약을 체결하여 운영한다.

제21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경상남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22조(예산과 결산)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제23조(보고 및 검사) ①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3조의2(성과계약) 도지사는 원장과 원장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26>

제23조의3(경영실적 평가) ① 도지사는 재단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

2. ·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
3. 전년도 결산서
4. 최근 3년간 경영실적
5. 제23조의2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6. 그 밖에 경영실적의 평가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본조 신설 2014.12.26>

제23조의4(경영공시)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전년도의 결산서
3. 전년도 임원 및 운영인력의 현황
4. 전년도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5. 제23조의2에 따른 성과계약서상의 계약의 달성 정도
6. 제23조의3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
7. 외부기관의 감사 결과·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본조신설 2014.12.26>

제23조의5(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설립허가의 취소
2. 설립 목적의 달성, 존립기간의 만료
3. 합병하거나 파산한 경우
4.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재단 해산 시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출연한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다)에 귀속된다.<본조신설 2014.12.26>

제2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재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4.12.26, 2018.6.28>

제25조(공무원의 파견) ① 도지사와 해당 시장·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6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로봣랜드의 원활한 조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시장·군수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2014.10.10>

1. 토지 보상 업무에 관한 사항
2. 어업권 보상 업무에 관한 사항

5.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2018. 11. 2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131호, 2018. 11. 21., 일부개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기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주요내용

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사회재활지원비”란 저소득층 정신질환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에서 약물치료, 재활치료 등을 받을 때 발생하게 되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말한다.
3. “의료비”란 저소득층 정신질환자가 치료중단으로 인한 증상 재발과 재입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신의료기관에서 외래상담 및 진료, 약물치료, 낮병원 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응급입원비”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5. “취업자립촉진비”란 정신질환자가 취업한 경우 노동의욕을 고취하고 생산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6. “자립정착지원비”란 정신질환자가 장기간 입소 또는 입원 후 퇴소나 퇴원을 한 경우 지역사회에 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의료기관 낮병원

(“관계기관”이라 한다)에 등록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제6조에 따라 선발된 정신질환자로 할 수 있다.

1. 장기간 입소·입원 후 퇴소·퇴원한 사람
2. 지속적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외래치료 또는 낮병원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3. 응급입원치료가 필요한 사람
4. 취업한 사람

제5조(추천) 관계기관은 제4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 후보자로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제로 경제적 부양의무이행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건강보험급여 대상자

제6조(선발)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수시로 지원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다.

제7조(의무사항)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발된 사람과 그 가족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1.>

1. 선발된 사람은 관계기관에서 재활치료, 약물치료 등을 지속하여야 함
2. 선발된 사람 중 취업을 한 사람은 관계기관의 취업자모임에 분기별 1회 이상 참석
3. 선발된 사람 또는 그 가족은 분기별 1회 이상 관계기관에 내방하여 상담하거나 가족교육에 참석
4. 선발된 사람 또는 그 가족은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등에 입원 또는 퇴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상담

제8조(지원기준)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1.2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가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의 100분의

50 지역사회재활지원비

2. 정신의료기관 외래진료 및 상담, 약물치료 또는 낮병원 이용 시 발생한 의료비
3. 응급입원에 소요된 실제 비용(이 경우 응급입원비는 연 2회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해당 연도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취업자립촉진비
5. 자립정착지원비(다만, 1년에 한하여 500만원의 범위에서 실제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필요한 경우 1년을 추가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중단) ① 도지사는 지원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1. 선발된 사람 또는 그 가족이 제7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2. 제5조제2호에 따라 선발된 사람 중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경제적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확인된 건강보험급여 대상자
3.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4. 지원대상자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1.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2019. 1. 1.] [서울특별시동대문구조례 제1262호, 2018. 12. 13., 제정]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동대문구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생활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 간에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4. “구민”이란 「주민등록법」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신고를 한 주민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피보험자는 모든 구민으로 한다. 다만, 등록 외국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가입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험계약 체결 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과 협의하여 재난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보험 증권과 약관에 정할 수 있다. 다만, 재난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구민에 대하여서는 추가적인 보상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보험료 납입) 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이 접수하여야 한다.

- ② 보험회사가 피해를 조사할 때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액의 산정)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 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상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신청) 재보험 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및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10조(보상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재난 발생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원을 받는 경우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2. 동구 읍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8. 11. 26.] [대구광역시동구조례 제1248호, 2018. 11. 26., 제정]

대구광역시 동구 읍부즈만을 구성·운영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구민의 권익보호 및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상호 신뢰하는 공직 및 사회풍토의 조성에 이바지함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부즈만”이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기관 등의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감시와 고충민원의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2. “고충민원”이란 구 및 소속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 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3. “소속기관 등”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 및 법령 등에 따라 그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4.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읍부즈만 구성) ① 읍부즈만은 3명 이내로 구성하되,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읍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법무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민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제4조(대표옴부즈만 등) ①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중에서 호선하며, 옴부즈만을 대표한다.

② 부옴부즈만은 대표옴부즈만이 지명한다.

③ 대표옴부즈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 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한 당원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옴부즈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6조(겸직금지) 옴부즈만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7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옴부즈만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운 옴부즈만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기는 새로 개시된다.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와 다르게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옴부즈만의 직무를 이행하지 못 하였을 경우

4. 심신상의 장애,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제8조(비밀유지 의무) 옴부즈만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9조(옴부즈만의 제척·기피·회피)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옴부즈만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옴부즈만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옴부즈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옴부즈만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 옴부즈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옴부즈만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 옴부즈만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옴부즈만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직무) ① 옴부즈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 불편사항 및 공직 부조리에 대한 의견제시 또는 제도개선 권고
2. 주민들의 권익 보호·구제와 관련된 사항과 민원(고충민원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을 포함)에 대한 조사·처리
3.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조정·중재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만에게 위임·의뢰하는 사안의 조사·처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로 보지 아니한다.

1. 구의회에 관한 사항
2.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판결로 확정된 사항
3.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5. 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6. 옴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항

제11조(회의 운영) 옴부즈만은 상호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적 옴부즈만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옴부즈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시정권고, 제도개선 권고,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3. 그 밖에 대표옴부즈만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고충민원의 사실내용

3. 인·허가 등의 신청내용 및 시기, 관련 처분 등(사실행위를 포함)의 시기와 그 내용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민원인과의 관계

5. 소송 및 다른 법령상 불복 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6. 다수인 민원의 경우 3명 이내의 대표자 선정 및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

제13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고 1개월 이내에 조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고충민원 신청인이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과 직·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할 때

2. 고충민원의 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할 수 있다.

3. 허위 또는 그 밖에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제14조(고충민원 조사 방법)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조사할 경우에는 구의 관련 부서에 그 취지를 통보한다.

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 또는 관련 대상기관에 대하여 질문하고 현황을 청취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직접 조사·처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고충민원은 이를 관련 부서에 넘기어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의견제출 기회 부여) ① 옴부즈만은 소속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소속행정기관 등의 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소속행정기관 등의 직원·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옴부즈만이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6조(합의권고 및 조정)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7조(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옴부즈만은 직무와 관련한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감사 요구, 권고,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8조(고충민원 신청인에 대한 통지)· ① 제13조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와 고충민원 처리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붙여 고충신청인에게 조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고충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고충민원의 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3일 이내에 고충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① 옴부즈만은 매년 운영상황을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과 구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20조(조치결과의 통지 등)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옴부즈만의 시정·권고 등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력과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3. 동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등에 관한 조례

[2018. 11. 27.] [광주광역시동구조례 제1270호, 2018. 11. 27., 제정]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μm)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μm) 이하인 먼지

2. “예보”란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 관측된 기상자료 및 기상예보 자료 등을 고려하여 예측된 농도지수를 사전에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3. “경보”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된 시간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인 때에 이를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4. “미세먼지 농도”란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의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5. “환경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예보 및 경보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이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예보 및 경보 등) ① 구청장은 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포함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내용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미세먼지 예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세먼지는 $81\mu\text{g}/\text{m}^3$ 이상, 초미세먼지는 $51\mu\text{g}/\text{m}^3$ 이상일 경우에 실시한다.

4. 안산시 안전도시

[2018. 11. 23.] [경기도안산시조례 제2201호, 2018. 11. 23., 일부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안산시의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손상을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손상”이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체 또는 정신에 미치는 건강상 해로운 결과가 발생한 상태로서, 그 발생원인을 통제하여 예방 가능한 것을 말한다.
2. “안전”이란 사고나 손상을 당할 위험이 없는 편안한 상태를 말한다.
3. “안전도시”란 안전과 보건을 포함한 것으로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참여를 통해 일상생활, 산업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질병 및 손상을 예방하고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4. “안전도시사업”이란 제3호에 규정된 안전도시의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안전증진”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재난·안전사고 및 손상예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6.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본호신설 2016.1.11.>
7.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으로서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지를 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본호신설 2018.11.23.】

제3조(기본원칙) ①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안전도시 구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례에서 규정 하고 있는 사항의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②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공동체에서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위하여 책임이 있는 각계각층이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한다.

③ 시장은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 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④ 시장은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안산시 안전도시 사업을 홍보하고 전파하며, 상호간 교류 및 협력을 통하여 안전도시 발전에 기여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참여) ① 모든 시민은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가 있으며, 이를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 또는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모든 시민은 안전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능동적·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손상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 등 제반 규정사항을 준수하며, 스스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의 책무) 시장은 안전도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

제7조(안전도시사업의 범위) ① 시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도시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
3. 손상예방 및 안전증진 프로그램 개발·보급·운영에 관한 사항
4. 안전도시 사업의 평가 및 지표설정 등 용역에 관한 사항
5. 손상감시체계 구축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6. 안전 관련 시설의 설치, 물품 및 설비개선 등 지원·장려에 관한 사항
7.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용품 보급 등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1.23.>

8. 안전도시 사업의 국내·외적 교류 및 활동에 관한 사항
 9.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10.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의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삭제<2017.1.13.>
 12. 안전문화활동 추진에 관한 정책개발과 시행,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본호신설 2016.1.11.>
 13. 각 실무부서간의 업무분담과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1.>
 14.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개정 2016.1.11.>
- ② 제1항의 사업 중 적합한 사업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안전도시협의회 설치) 시장은 지역사회의 역량을 모아 안전도시 구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안산시 안전도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제9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안전도시 사업 추진계획 및 발전방안
2. 안전도시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
3. 관련 기관·단체의 역할분담과 상호 연계·협력·지원
4. 민·관 합동 안전도시 및 안전문화활동 추진 <본호개정 2016.1.11.>
5. 안전문화활동 실천과제와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홍보 전략 수립 <신설 2016.1.11.>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6.1.11.>

제10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안전도시업무 담당국장과 상록수보건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안산시의회 의원
2. 안전도시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의 장
3. 그 밖에 안전도시와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본조개정 2016.1.11.]

제11조(협의회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신분변동,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1.>

제12조(협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협의회 운영 등)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 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본조개정 2016.1.11.]

제15조(안전도시실무위원회) ① 안전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의회 산하에 안전도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60명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안전도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01.13>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협의회를 구성하는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시장이 임명하는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안전도시와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④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획홍보,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보건안전, 시설안전, 범죄안전, 식품안전, 재난안전 등 분야별로 분과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⑤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시의 안전도시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7.11.20.>

⑥ 실무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존속기한)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본조신설 2016.1.11.]. <개정 2017.01.13>

제17조(관련기관의 협조요청 등) <개정 2016.1.11.>

① 협의회와 실무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0조 제4항 각호에 따른 기관·단체의 장은 안산시에 발생한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정보를 상호 공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단체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운영) <개정 2016.1.11.>

①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목적달성 및 사업수행에 적합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안전도시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탁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3.8.2.>

제19조(운영지원) 시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2017. 1.13.>

제20조(보조금의 지급) ① 시장은 안전도시 및 안전문화 증진을 위하여 사고 손상 및 산업재해 예방 등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사업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16.1.11.]

제21조(수당 등) <개정 2016.1.11.>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5. 춘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2018. 11. 30.] [강원도춘천시조례 제1375호, 2018. 11. 30., 제정]

춘천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을 공공급식에 공급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고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은 비상업적인 단체급식이 이루어지는 집단급식소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급식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 「축산법」 제2조제3호의 축산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3. “지역먹거리”란 제2호에 따른 농산물이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되거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주민에게 공급되는 농산물로서 시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4. “우수농산물”이란 유통과정의 역추적이 가능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품
 -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우수축산물 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
 - 다.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 등 인증을 받은 식품
 - 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산물
 - 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 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증한 농산물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2. 공공급식에 시 농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및 유통 기반을 확충에 필요한 지원
3. 친환경 재배 방법으로서의 전환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
4.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건강한 식생활을 정착하기 위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6. 그 밖에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각 기관·단체 간의 네트워크 지원 사업 등

② 시장은 제13조 각 호의 기관, 단체, 시설 등의 대표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먹거리에 기초한 공공급식이 이루어지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 및 시행방안의 마련
2. 지역먹거리에 기초한 공공급식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배분 방안, 지역먹거리에 기초한 공공급식의 확대방안 마련
3.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여 지역먹거리를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는 등 지역먹거리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

제4조(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시장은 공공급식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설치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에 의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둔 것으로 본다.

1.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의 경비 및 지원 대상·방법·규모·내용에 관한 사항
3. 공공급식 재료 생산단지의 조직화 및 생산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공급식 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등 공공급식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
5. 공공급식의 영양 개선 및 식생활 개선 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급식의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담당과장,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급식

업무 담당과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의 품질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시민단체 또는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학부모협의회에서 추천한 학부모
4. 학교영양사회 또는 학교영양교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5.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지역먹거리 등의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학생 대표
9. 그 밖에 지역먹거리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3.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 자격을 유지하기가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공급식업무 담당이 된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공공급식 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4조의2 등에 따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강, 소비, 환경, 문화, 사회관계, 공공보건 및 사회 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먹거리의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목표 설정
2. 지역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한 생산·가공·유통 기반의 확충
3. 공공급식 지원 대상자별 지원방법
4.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지역먹거리의 공급 확대
5. 공공급식의 통합관리 및 먹거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
6. 공공급식기관의 지역먹거리에 대한 이해 증진과 농촌체험 및 교육기회 제공
7. 올바른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선진사례의 벤치마킹
8.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예산안을 수립할 때에 공공급식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과의 민관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13조(공공급식의 지원 대상) ① 공공급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의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 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시설
5.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군부대

7. 「지역보건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8.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9.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기관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대상자 가운데 우선 지원 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공공급식의 지원방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식자재 지원

2. 단체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3.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4. 도시락 배달

5. 부식 등 식재료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공공급식의 재료는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현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현물로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1. 지역먹거리 중 우수농산물

2. 제1호 외의 지역먹거리

3. 시 이외 지역의 우수농산물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급식재료를 구매하는 데에 필요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3항 각 호의 순서대로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노력) ① 시장은 제13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공공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급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공급식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지원대상자 등의 노력) 제13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단체, 시설 등은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급식 재료를 구매함으로써 신선하고 안전하며 질 좋은 공공급식을 실현하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정보공개) 시장은 공공급식지원의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시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공공급식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농산물의 기획생산, 유통 및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역할을 수행한다.

③ 급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캠페인, 교육 및 홍보 업무
2. 공공급식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생산과 가공의 합리적 재편
3.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공동체 중심의 기획생산 단지 조성
4.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의 냉동·냉장방식 유통 등 안전성 관리시스템 구축
5. 원활한 수주·발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통합전산시스템의 구축
6. 소비와 생산 간의 사회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각종 교육 및 체험사업의 기획·추진
7. 그 밖에 공공급식의 지원에 관한 업무

제19조(급식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급식지원센터는 시장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생산 및 유통, 마케팅을 실현할 수 있는 전문조직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급식지원센터를 직접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급식지원센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력을 둘 수 있다.

1. 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총괄과 대외협력업무의 추진을 위한 센터장
2. 공공급식에 관한 교육·홍보, 생산·유통, 재무관리 등 급식지원센터의 업무 처리를 위한 관리요원

③ 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시 소속 공무원, 교육청 소속 공무원, 생산자단체의 대표자, 급식재료 공급업체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하는 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6. 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019. 1. 2.] [전라북도익산시조례 제1806호, 2018. 11. 23., 일부개정]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아동급식위원회 설치·운영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제3조(의결정족수) 이 조례에 관련된 위원회 등의 의결시에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제4조(아동위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아동위원을 둔다.

제5조(정수) 아동위원의 정수는 각 읍·면·동당 1명으로 한다.

제6조(아동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위원이 역할 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가족 및 그 밖에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였을 때

제7조(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역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관할 구역 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원조와 지도
3. 아동복지에 관하여 전담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4.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시 읍·면·동 및 시에 알림

제9조(수당 등)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교육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익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 빈곤 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8.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도록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9.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아동복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장의 부재 시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아동복지 업무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 익산교육지원청 생활건강지원과 생활담당 장학사
2. 사회복지시설에서 사무국장급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 하였던 사람
3.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위원의 심의 업무와 관련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때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5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 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에는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담당계장이 된다.

제16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③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전과 관계된 기관에 소속된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한다.

제18조(위원의 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9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심의위원회는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20조(우선조치) 시장은 제11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한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심의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회의의 비공개) 심의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설치) 시장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동급식에 대한 심의·의결 및 자문을 하기 위하여 익산시 아동급식위원회(이하 “급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5조(기능) 급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급식지원 대상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단체(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급식위생, 식중독예방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 활동, 급식모니터 활동에 관한 사항
6.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대책에 관한 사항
7. 급식보조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8.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 9. 아동급식관련 저소득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 10. 아동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제26조(급식위원회의 구성 등) ① 급식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정책과장, 보건지원과장, 위생과장, 익산교육지원청 생활건강지원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1.23>

1. 관내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학부모, 교사, 교육청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급식운영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제27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2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급식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회의) ① 급식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급식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31조(간사) ① 급식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급식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급식 업무담당계장이 된다.

제32조(아동급식지킴이) ①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감시 등을 위하여 급식위원회에

아동급식지킴이(이하 “지킴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지킴이는 통·리장, 부녀회장, 학부모 및 교사, 영양사, 시민·시민단체 등 자원봉사를 신청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지킴이 활동 중 급식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읍·면·동장에게 보고하고, 읍·면·동장은 시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며, 시장은 다른 예산보다 우선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3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4조(그 밖의 급식위원회 운영) 그 밖의 급식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급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5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시장은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그 가정의 지원대상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다음 각 호의 통합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다.

1.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2. 아동의 기초학습 및 사회성·정서 발달 교육지원
3. 부모의 양육 지도
4. 그 밖에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제36조(아동복지시설 지원) 시장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양육, 교육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2.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3.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지원

제37조(비용보조) 시장은 제35조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8조(포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1. 아동의 복지 증진 및 보호, 학대예방 등에 기여한 사람 및 단체
2. 법에서 정한 어린이주간에 타인의 모범이 되는 아동 등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의정토론회

< '18. 11. 15.(목), 14:00~16:00/ 충남도서관 문화교육동 다목적실 >



I 총 평

- 2006년이후 도청이전 예정지 지정 공고에 따라 조성되고 있는 내포신도시의 자족기능 강화와 정주여건 창출을 통한 주민의 삶의 향상을 모색하기 위한 의정토론회로,
 - 참석자 대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보다 실제적인 내포신도시 발전 방안을 마련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 특히, 내포신도시의 현재의 문제인 축산악취문제의 근원적 해결, 대학병원급의 종합병원 설치, 시외버스터미널 설치, 내포신도시첨단 산업단지에 대한 클러스터 도시 조성, 내포지역의 주차장 확충, 기관유치, 교육여건 개선, 체육시설 확충,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여성회관 설치, 대형마트 유치, 내포신도시 내 홍성과 예산지역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상 문제 등을 제시
-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의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공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

II 주요 토론내용

1 주제발표

< 송채규 (행정복지연구소 소장) >

-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제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함

□ 개선을 위해

- 첫째, 악취문제 해결을 통한 생활환경개선
 - 최신의 기술력 이용 해결하려는 능력 및 역량 부족
 - 법령에 맞는 조례 제정
 - 해당 사업자와 관계자 설득 등 해결을 위한 관련 의지 부족
- 둘째, 아동과 여성의 안전 및 다양한 문화 활동 권장
 - 체감 안전을 위한 사전 조치 필요
 - 충남도내 여성 단체 등의 조직 구성원 중 내포 신도시 거주 여성 가입 및 실제 안전 활동의 계획과 진행 여부 검토
 - 어린이 공원 내 부모와 함께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 배치 필요
 - 내포의 아동과 여성들의 문화활동 참여 여건 마련
- 셋째, 청소년 문화콘텐츠 개발
 - 청소년 문화활동 공간 부족
 - 청소년 진흥원의 내포이전 지원 노력 필요
- 넷째, 홍예공원, 보훈공원의 관광상품화
 - 내포신도시의 랜드마크화
 - 다양한 공원시설 계획을 통한 공원의 스토리 부여

□ 자족도시 조성

- 첫째, 도시의 시설물 설치 및 효율적 활용
 - 지역의 경제적 유인책 발굴을 통한 기업의 유치
 - 공공기관 내 입주된 단체 사무실의 민간건물로의 이전
 - 충남도서관 문화교육동의 개방형 전환
- 둘째, 규제위주에서 장려, 권장위주로의 조례제정을 통한 행정제도 보완

- 셋째, 혁신도시 건의 및 혁신클러스터 극대화
 - 지자체, 시민단체의 지속적 확인 및 촉구 노력 필요와 사전 준비
- 넷째, 기초생활권의 지정 및 활용
 - 홍성군과 예산군과의 협의를 통한 기초생활권 지정
 - 기초단체와 충남도,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공식적 통합단체 필요



- 내포신도시 건설이 홍성군 예산군 및 인접시군의 인력을 흡수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결국 모두가 상생 발전하는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초생활권의 중심지로써 스마트기술 활용, 주변지역과의 유기적 연결하는 과학기술력 유치 등으로 새로운 개념의 정주여건과 자족도시로의 기능 발휘를 위해 시민단체와 관이 노력할 필요가 있음

2 지 정 토 론 (6인)

방한일 (충청남도의회 의원)

□ 수요창출형 도시로의 전환

- 첫째, 일상적 자족기능을 갖추기 위해 인구집객발전전략 수립할 것
 - 인구집객 발전전략 : 도시의 정체성 확보 및 그에 맞는 인구 유입과 유동인구를 활성화하는 전략
- 둘째, 내포신도시 권역단위 자족성 확보
 - 계획인구 10만명 유치보다는 고용창출 목표 설정
 - 내포신도시의 민간기관 및 업체의 유치 촉진을 위해 주변지역과 협력 필요
- 셋째, 내포신도시 개발계획 및 사업과의 경쟁 중복 우려의 토지이용 및 개발 사업 조정과 통제를 위한 통합도시계획 수립
- 넷째, 내포신도시 주변지역에 상생산업단지 조성

□ 인간중심도시로의 전환

- 첫째,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로의 성격 전환
 - 추가 이전 공공기관 대상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저밀도 분산 배치

- 노천카페 설치 및 연도형 아파트 확대 시범사업 추진
- 둘째, 내포신도시 공동체 활성화
- 셋째, 사회적 약자 배려와 포용적 성장 지향
 - 개발계획에서부터 개별 시설물의 계획 설계·유지관리단계까지 사회적 약자의 입장과 특성을 반영하여 여성과 아이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 마련
- 넷째, 홍성, 예산 공동화 현상을 억제하는 충남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② 임승만 (충청남도 내포신도시건설과장)

혁신도시로의 지정사항

- 혁신도시로의 당위성이 커져있는 상황임
 - 혁신도시법 개정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 및 충남도, 대전시가 연대하여 적극적 노력 중
- 공공기관 이전은 16개 기관 중 5~10개 기관유치를 목표로 도청 내 유관 부서 간 T/F 구성하여 적극적 대응

내포신도시 주변 기반시설 확충계획

- 고속도로의 경우
 - '22년을 개통 목표로 서부내륙고속도로 추진 중
- 철도, 전철의 경우
 - '20년 준공 목표로 서해선 복선 전철 추진
 - '22년 완료 목표로 장항선 복선 전철화 사업(현, 에타 통과) 추진 중
- 광역교통체계 구축 중
 - 내포~평택당진항, 내포~세종, 내포~태안, 내포~북천안IC 등 내포 신도시와의 접근성 개선

결론

-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 도시첨단산업단지 우량 기업 유치, 혁신도시 지정, 충남대학교 및 종합병원 유치, 악취제거 등이 필요
 - 도민, 시민단체, 행정기관 등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함이 필요

③ 정호영 (행정복지연구소 협력위원장)

□ 문화콘텐츠 개발의 필요성

- 지역사회가 창의성과 상상력을 지원하는 창의기반 조성
- 청소년 문화 콘텐츠 지원을 통한 창의인재 양성
- 정주여건 개선
- 건강한 청소년 놀이문화 조성
- 청소년 성문화에 대한 인식제고로 양성평등 사회의 실현

□ 청소년 문화콘텐츠 개발의 시급성

- 청소년들의 자발적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마련과 콘텐츠 확산 시급하며,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역량 강화 및 실험들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한 사회배려가 미력함
- 청소년들이 사회, 문화적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시설 및 문화콘텐츠 개발과 활동지원이 필요

□ 청소년 콘텐츠 개발 방향

- 인문체험을 위한 생태계 구축 필요
 - 지역사회는 인문콘텐츠 자원이 상호 교류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 수요자 맞춤의 인문체험 프로그램 확충
- 전문기획 운영 인력 확보
 - 지역학교 교사와 문화단체, 공공기관과 연계

□ 맺는말

- 청소년들이 자주적으로 꾸려갈 수 있는 문화활동 공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관계기관이나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 필요
- 청소년 문화 활성화 공간 추가 확보가 어려울 경우 다음과 같이 제안함
 - 첫째, 충남도서관 활용
 - 둘째, 충남도의회 공간 우선 사용
 - 셋째, 충남청소년 진흥원의 내포이전

④ 이회정 (행정복지연구소 행정위원장)

처리와 축사 악취 대책들

- 그동안 지자체가 추진한 사업들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의 지속적 투입되고도 악취 저감에 대한 근본적 대책으로 미흡
 - 가축분뇨 수거, 악취저감제 지원, 하절기 전 특별 관리지역 가축 분뇨 처리사업, 무인악취 포집기 운영,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 및 점검, 농가별 책임공무원 지정, 불량퇴비 살포 감시원 운영, 수분조절제 지원, 바이오커튼 시설 지원 등
 - 홍성군의회 악취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 등

선진사례 제시

- 논산계룡축협, 자연순환농업시스템 제시

자연순환농업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 축산농가, 경종농가, 지역주민, 지자체, 의회, 축농협, 시민단체 등 자발적 협의체 구성
- 규제 완화 및 절차 간소화와 관련 예산의 지속적 지원
- 사회단체에서의 연구와 다양한 우수사례 발굴 필요

박진희 (글로벌유치원 운영위원장)

여성의 안전시설 증설 제안

- 천변을 따라 위치한 다수 지하도의 조명 증설 및 비상안심벨 설치
- 개발부재지역에 인접한 주거지 옆 도로의 보안등 증설

다양한 아동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안

- 아동을 위한 문화놀이공간 제공
 - 도청이나 도서관 등 내포 기존시설 중 일부를 소공연장 또는 무대 및 콘텐츠 제공
- 내포 도심권 및 모든 아동문화여가시설을 아우르는 어린이 통합 문화셔틀버스 운행
-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마련

⑥ 박현옥 (청운대학교 공간디자인학과 교수)

□ **공간디자인 목표 설정 방향성**

- 자족성 확보, 주변도시와의 삶의 질 수준 격차 해소, 생산 소비의 선순환 체계 구축
- 스마트도시(교통, 안전, 에너지)로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타당성 확보

□ **거주자가 이용하기 쉽고 삶의 자족성을 누리는 공간화를 위해**

- 블록별 생태환경, 공원, 행정기반, 상업지와 주거지등의 공간구성에 있어서 연결과 링크 개념 강화
 - 상징적 입체적 연결 공간 제안
- 입체적 브릿지를 통한 연결을 통한 랜드마크화
 - 영국 런던, 보행전용 밀레니엄 브릿지
 - 충남도청~충남도서관을 연계하는 보행전용 브릿지 제안
- 건물 1층 필로티 공간 보행로 연결 제안

□ **시민참여 거버넌스 구축**

- 주민참여 리빙랩 필요
 - 공공안전, 시설점검은 공공체계에서 통제와 관리 가능
 - 개별주거공간 및 공동체 삶의 공간 형성은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시민거버넌스 구축 및 적극적 지원으로 실행체계 구축
 - 이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현명한 사회생태시스템 구축 가능

3 청중토론

- 내포신도시와 주변 지역과의 연계 상생발전에 대한 불만 폭주 및 대책 마련 촉구

[: 홍성읍 이장협의회 사무국장]

⇒ 홍성군에서 관련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관련부서등과의 다각적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

[답변 : 임승만 충청남도 내포신도시건설과장]

- 1. 실버세대를 위한 대책 미비
- 2. 내포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기업유치가 필수적
- 3. 예산, 흥성군의 도시공동화현상 발생하고 있으며 대책마련 촉구
- 4. 통근 버스운행 문제 제기
- 5. 행정기관 주변의 상업지 활성화를 위한 문제 제기

[: 내포 주민]

- ⇒ 1. 실버관련해서는 현재는 미흡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고려
- 2. 기업유치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 3. 공동화 문제는 도차원에서 해결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중앙정부차원에서 구도심의 경우는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추진하고 있다
- 4. 통근버스의 경우는 초기보다는 축소되어 운영되고 있다
- 5. 현재 구내식당을 한달에 2회 휴무되고 있으며, 경찰청, 교육청과 연계한 동시 휴무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답변 : 임승만 충청남도 내포신도시건설과장]

III 토론회 도출과제 및 결론

<도출과제>

- 1. 내포신도시 축사 악취발생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 강구
- 2. 내포신도시의 자족성 강화를 위해 기업유치 필요
- 3. 내포신도시 주변지역의 공동화 현상 완화 방안 강구

⇒ 도출된 과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통보

<결 론>

- 축사 악취 발생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 및 대책 수립
- 내포신도시내 기업유치를 위한 충청남도의 적극적 방안 마련과 주도적 역할 제시
- 내포 주변지역의 공동화 현상 완화를 위한 충청도와 홍성·예산군의 역할과 대책 수립

IV 후속조치(행정 · 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도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통보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 관리
 - 충청남도(신도시건설과)
 - 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충남 중증장애아동 재활치료 확대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

< '18. 11. 20.(화), 14:00~15:30/ 충청남도의회 108호 >

I 총 평



○ 충남 중증장애아동 재활치료 확대방안을 찾아보고자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된 의정토론회로,

- 참석자 대부분은 충청남도의회 차원에서 중증장애아동들의 재활치료를 위한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준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 중증장애아동을 돌보고 있는 부모들이 토론자로 참여, 중증장애아의 치료에 대한 어려움 및 문제점을 현실감 있게 발표하는 등
- 금번 토론회를 통해 중증장애아동들의 치료만이 아닌 돌봄과 교육연계의 필요성에 대한 재인식 및 중증장애아동 재활치료 전문병원의 필요성, 홍성의료원 재활병동의 부활 등 더 발전된 정책들이 체계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음.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의견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관계기관 등과 공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코자 함.

II 주요 토론내용

1 주제발표

<김동석(사)토닥토닥 대표>

- 우리나라는 2016년 민간어린이재활병원이 기부를 통해 건립된 한 곳밖에 없지만 옆 나라 일본은 몇 년 전에도 200개가 넘게 있었음.
- 2015년 12월 기준 19세 이하 장애인 인구는 전체 등록 장애인의 3.6%이며, 중증장애인의 비율은 87.1%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을 뿐만 아니라 중증장애 아동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장애인의 조사망률이 전체 인구비율에 비해 4배 정도 많으며, 특히 10대 미만의 장애인 조사망률은 무려 37.9배로 가장 높음.
- 중증장애아동들의 비율 증가와 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재활치료시설의 부족은 중증아동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 있음.
- 아동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 부모 등은 자가용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상당한 위험을 동반함으로 장애인콜택시 등 이동수단 편의 제공 보완이 요구됨.
- 치료와 교육 중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돌봄·교육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함.
- 충남권어린이공공재활병원이 추진 중인데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음(운영주체, 운영비지원, 입원30병상으로 동네의원급, 치료받지 못하는 아동을 제외한 수용예측)
- 충남권어린이공공재활병원이 대전에 건립되지만 충남·세종이 권역으로 묶여 있기에 지역과 연결이 될 수 있는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함

- 재활이 기피되어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의료적 차원에서 소아재활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며, 외래가 가능한 지역 내 보건소의 역할 변화 (사례: 대전 서구보건소 시행중임), 민간 재활병원 소아재활치료 확대, 중증 소아 재택의료사업(방문의료) 고려
- 장애아동가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공무원 등이 중증아동에 대한 재활 치료 확대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

2] 지정토론 (4인)

1 김기철(홍성군의회 의원)

- 장애인의 재활은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영역에서의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의 접근이 요구되며,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적 가치 실현을 위해 장애어린이재활치료를 책임져야 함.
- 홍성의료원의 재활병동은 98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 개원하였으나 개원한지 1년여만에 잠정폐원상태로, 빠른 부활을 위해 도민으로서 특히 홍성군민으로써 더 많이 이슈화해야할 이야기임.
- 재활병원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 보았음.
 - ① 홍성의료원 재활병원을 순수하게 부활해서 어린이재활병원과 병행을 해서 80병상 중에 30병상 정도 낮병동으로 해서 김동석 대표님 말씀처럼 치료·돌봄·교육을 할 수 있는 통합재활병원 운영
 - ② 홍성의료원에 도유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유지에 어린이 통합재활 센터만 별도 신축하는 방안
 - ③ 내포신도시 병원부지 자리에 어린이재활병원 신축하는 방안
- 아주 근접한 서북부(홍성·예산·서산·태안 등) 지역을 포함할 수 있는 홍성의료원이라는 좋은 공공시설이 있는데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

- 홍성의료원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아무리 좋은 과나 어린이 재활병원이 생겨도 고질적인 문제의 악순환은 계속될 것임.
- 이번 기회를 통해 도차원에서 홍성의료원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찾아주셨으면 좋겠음.

② 김현주(중증장애아동 학부모)

- 아이는 중학교 2학년이고 재활치료를 15년째하고 있는 치료난민입니다. 재활 치료를 받고 싶어도 병원에 가면 새로운 아이에게 양보하라고 거절당합니다. (13살 때 신촌세브란스에서 거절당하고, 15살에 분당차병원에서도 거절당함)
- 뇌병변장애아라서 몸이 뒤틀어지고 휘어지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며, 2차 성장이 오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고등학교때까지는 더 많이 뒤틀어짐.
- 아이는 치료가 시급하지만 치료는 거절당하는 상황이며, 우리 지역에는 재활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음.
 - 일반인은 하루 한끼 안먹어도, 하루 운동을 안해도 되지만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하루 한번 치료를 안했을 경우 잃는 부분들이 많음. 뒤로 퇴보했다 원상태로 복귀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됨.
- 홍성이라는 지역은 너무나 낙후되어 있고 시설이 열악한데 보건소·의료원에서 재활치료가 연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 중증장애아동, 정신지체가 심한 경우 일반치과에서는 의사가 위험을 동반하거나 의료소송에 때문에 치료를 받아주지 않고, 큰 병원으로 가야하는 상황으로 연계도 되어 있지 않는데 치과, 신경과, 내과, 재활 등의 재활전문병원이 생겼으면 좋겠음.

③ 이선재(프랑스자수 밴드 ‘가든’공동대표)

- 수를 놓는 엄마로써 수놓는 일로 남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

는데 밴드를 하면서 장애인어머니 회원들과 소통을 하면서 지수로 도울 수 있는 일을 찾게 되었고 작은 일이지만 전시회도 하게 되었고 재활치료의 열악한 상황을 알리는 계기도 되었음.

- '우리아이들은 좋아지려고 치료 받는 게 아니에요, 어제만큼 오늘하루 유지 되는 것으로도 최상의 치료입니다. 같이 살고 싶다.'라는 어느 사회복지사의 말에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 주고 싶음.

④ 박태진(충청남도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장)

- 우리도는 아산에 2017년~2020년도까지 충남권역재활병원(150병상)을 건립추진 하고 있으며, 건립과정 시 어린이재활병원을 염두해 두고 부지를 확보하였음.
- 아산에 재활병원을 건립하고 운영 추이를 살펴보면서 어린이재활병원도 근접 위치에 건립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자 함.
- 어린이재활병원을 단순히 치료쪽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토론에 참가 해보니 치료·돌봄·교육까지의 연계에 대한 부분이 있어 당초 구상과 달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장애인콜택시를 도내에서만이라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광역화하고자 하고 있으며, 장애인 당사자도 어렵지만 돌봄가족에게도 힐링을 할 수 있는 힐링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해보고자 단기·중기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음.

③ 자유토론(좌장·발제·토론자)

- 오늘 토론회를 들어보니 치료·돌봄·교육을 함께 한다고 하는데 치료·돌봄은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교육은 어떻게 병원에서 구현할 수 있을까라는 개념을 먼저 정리하고 나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명확해질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대표께서 이런 시스템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원 : 김연]

- 전국 10개의 대학종합병원에서 병원학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병원입원 과정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 치료가 중단되지 않으면서 병원안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모델이 대한민국에는 없는데요. 2015년 대한민국 최초로 대전에 병원파견학급*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 6개월 소아낮병원 입원기간에 교육을 받는데 병원에 한공간을 마련하여 교육청에서 교사를 파견, 상주하면서 아이들이 치료를 받지 않는 시간에 교육

- 현재 교육에 대한 모델부분들은 교육부가 고민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충남에서는 도지사, 교육감이 이부분에 평소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델이 나온다면 좀 더 빠르게 이야기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토닥토닥 대표 : 김동석]

- 우리가 아직 모델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장기치료를 통해서 교육이 단절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 홍성의료원의 재활병원을 빨리 복귀하면서 그중의 일부를 아동재활병원으로 분리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구요. 아산에 어린이재활병동을 만드는 것에 대해 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충청남도의회 의원 : 김연]

- 어린이재활병원을 치료기능 위주로 생각하였고 아산부지에 같이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대전충대는 인근 몇 개 시·군만 활용성이 되지 서산·태안·홍성·예산 등은 접근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산에 권역병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 기존의 의료원이나 인프라를 이용할 것인지 새로 건립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좀더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장 : 박태진]

- 사실 아산에 재활병원이 생긴다는 것을 많은 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장애인 당사자이고 장애인복지 쪽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는 저조차도 몰랐던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계획하고 타당성 조사도 하셔서 아산이 결정되었을 것입니다.

-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야기하는 사각지대를 우리는 의료에서도 놓쳐서는 안된다고 봐요. 아산·천안은 대학병원도 있고 대전·서울하고 접근성이 그나마 좋지만 태안·서산·청양·홍성·예산 등은 전라·대전·서울로 어디로 가기도 정말로 애매합니다.
- 제가 지금 장애인 당사자인 공인으로서 고려했을 때 재활병원이 아산에 지어지더라도 어린이재활병원만큼은 이쪽에 올인해주시기를 적극적으로 검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홍성군의회 의원 : 김기철]

- 천안에도 있어야 하고 홍성에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일본에는 200개 이상인데 하나가 지어진다고 이지역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서북부 지역이 의료취약지역인데 병원재활센터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토닥토닥대표 대표 : 김동석]

- 필요성들을 말씀하시면서 일본은 200여개가 넘게 있는데 우리가 두 개를 하는데 어디에 할꺼냐,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입장은 아닌 거 같습니다.
- 가급적이면 지금 있는 자원들을 최대 활용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재활병원이 가동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표일 것입니다.
- 병원의 기능을 조금 더 높여내기 위해서 그동안 치료중심의 병원들을 돌봄과 교육으로써 조금 더 확충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모색하는 방향성들까지 이야기 된 거 같습니다.
- 교육감님, 도지사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제 막 추진 중으로 하드웨어가 구성중이고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조금 더 고민이 필요 할 것입니다.
- 홍성의료원 일부를 재활치료아동 대상으로 할거라고 하면 의료진배치 등도 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안타깝게 홍성의 인구수가 30만이 안되기 때문에 종합병원이 들어서기는 불가능하고 종합병원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입니다.

- 우리가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첫 번째가 홍성의료원, 두 번째가 아산에 짓고 있는 재활병원에 어떻게 하면 어린이재활치료병동 내지는 치료공간을 만들 것인가의 문제 이 두가지를 가지고 논의해보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원 : 김연]

4 청중토론

- 의료와 관련된 것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의료전문가가 한 분쯤 오셨어야 하는데 빠져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홍성의료원에서라도 한 분이 오셔서 왜 간호인력 수급이 안되고 무엇이 어려운지, 실질적으로 어떠한 바램이 있고 욕구가 있는지, 이 자리에서 공감대 형성이 되었다더라면 훨씬 더 실질적인 다른 방안을 찾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 홍성의료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홍성군에서도 오셔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추진해 나가겠다는 립서비스라도 될지 언정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추진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질의 : 최선경]

⇒ 오늘 토론회가 기존의 토론회와 달리 많은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되었는데 여기까지 생각할 줄 알았으면 최선경님 말씀처럼 의료원 담당자, 재활병원 계획하고 있었던 사람, 홍성군 지자체 복지팀에서 오셔서 전체적으로 진단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더 좋았을텐데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아쉬움은 지금 이후로부터 출발해야되는 것 같습니다. 각 담당하시는 분들 찾아다니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들 더 모아가는 작업들 시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 충청남도의회 의원 김연]

- 재활치료병원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을 때 재활, 돌봄, 교육 이 세가지를 다 담아야하기에 조금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해보겠다는 취지로 팀장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장애아동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선순위가 치료이고 돌봄, 교육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한꺼번에 한 바구니에 다 넣으려고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로 일단 치료, 나아가 교육 이걸 한꺼번에 담지 말고 순차적으로 담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고려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릴고 싶습니다.

- 장애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힐링에 대해 말씀주시면서 힐링센터를 고려해 보겠다고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미 우리 충청도에는 가족원센터가 있으며, 홍성에는 홍성군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을 더 확대해서 또 재정적으로도 지원을 해서 장애인가족들을 잘 케어할 수 있고 힐링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이제 만들어주시면 되요.

굳이 다른 센터를 만드는 것보다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더 효과적으로 더 체계적으로 가족지원 하는데 좀 더 힘써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의 : 충남장애인부모회 홍성군지회장 엄기문]

- ⇒ 병원엔 치료를 목적으로 만들어 지는 게 맞고 요즘은 병원이 단순하게 치료뿐만 아니라 돌봄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서비스 질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에 교육적인 부분을 하나의 충족요건으로 가지려고 하는 것인데요.

아산 재활병원은 치료와 돌봄은 어느 정도 가능한데 2년 정도 남은기간에 교육이라는 시스템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구요.

세 가지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상의 목표를 여기에 두고 점차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 충청남도의회 의원 김연]

III 토론회 도출과제 및 결론

< 도출과제 >

1. 흥성의료원의 재활병동 또는 아산재활병원 등을 통해 중증장애 아동의 재활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심도있는 고민 필요
 2.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치료·돌봄·교육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 고려
- ⇒ 도출된 과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통보

< 결 론 >

-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치료·돌봄·교육에 대한 재인식, 장애당사자 및 가족의 어려움, 중증장애아동 재활치료 전문병원의 필요성과 공공의 역할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

IV 후속조치(행정 · 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도·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통보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 관리
 - 충청남도(장애인복지과)
 - 충청남도의회(문화복지위원회)

타 시·도 의회 주요동향

제15기 정책위원회 첫 연구발표회 및 전체회의 개최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신원철, 서대문1)의 정책의회 상 구현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고 있는 제15기 정책위원회(위원장 김희걸, 양천4)에서는 지난 11월 30일(금) 17시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첫 연구 발표회와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제15기 정책위원회는 서울시의원 22명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8명의 외부위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연구·발표하여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연구발표회에서 이택수(리얼미터 대표) 위원은 「지방자치단체 평가와 여론조사 방법론」을, 이성모(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 위원은 「교통영향평가제도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조 숙(서울의료원 소통협력팀장) 위원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지역사회 포괄케어시스템」을, 문장길(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위원은 「주거공간 화재 인명피해 저감 방안」을 각각 발표하였으며, 서울시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하여 향후 시 정책 반영 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 활발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및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에 따라 2017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34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등 정책위원회의 임무를 철저히 수행하였다.

김희걸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첫 연구발표부터 성실히 발표를 준비해 주신 것에 모든 위원들께 감사를 표하고, “정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활발한 정책연구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며, “15기 정책위원회는 정책 기능을 보다 강화하여 정책 제안에 대한 서울시 정책 반영률을 높임으로써 명실상부한 의회 정책위원회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부산광역시의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출범

- 2018.11.29.(목) 13:30, 의원회관 1층 특위사무실, 현판식 개최 -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난 10월 26일 제2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부산광역시의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10명의 위원을 선임했다.

민생경제특별위원회는 이 날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곽동혁 의원(수영구2, 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에 김혜린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윤지영 의원(비례대표, 자유한국당)을 선출했다. 특위 활동기간은 내년 10월 25일까지 1년간 이다.

부산광역시의회는 11월 29일 오후 1시 30분에 의원회관 1층에 마련된 특위사무실에서 박인영 의장, 곽동혁 특위위원장, 특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가졌다.

민생경제특별위원회는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현장방문,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시민의 고용과 소득 불안정을 해소하고 관내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곽동혁 위원장은 중앙정부의 다양한 민생경제 지원정책이 관내 소상공인·자영업자, 취약계층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밀착형·맞춤형 정책을 통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의회, 제7대 의회 의정백서 발간

- 역사적 사료 및 의정활동 지침서로 활용 -

대전시의회가 제7대 의회 4년간(2014. 7. ~ 2018. 6)의 회기별 의정활동 등을 정리·집약한 제7대 의회 의정백서를 발간했다.

이번 의정백서는 총 1,452쪽 분량으로 ▲제1장 의회현황 ▲제2장 회기별 주요 의정활동 내용을 수록한 의정활동 ▲제3장 청원·진정처리 ▲제4장 현장방문활동 및 의원연찬회 등 기타의정활동 ▲제5장 의정통계 ▲제6장 부록은 시의원 프로필, 의정일지, 선거현황 등의 내용이 수록됐다.

발간된 의정백서는 총 400부로 제7대의원, 시 및 산하기관, 구의회, 관내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타시도 의회 등에 배부되고 향후 의정활동의 방향 정립 및 발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되게 된다.

의정백서 발간 담당자인 총무담당관실 서옥주 주무관은 “지난 제7대 의회 의정백서가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경청하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쏟았던 7대 의회의 소중한 역사적 사료로 향후 의정활동을 하는 지침서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7대 의회는 의원발의 조례안이 과거부터 6대까지 발의한 건수를 초과 하는 등 대전시의회 개원 이래로 가장 왕성한 입법활동을 펼쳤으며, 조례안 831건을 비롯하여 동의안 101건, 결의 및 건의안 137건 등 총 1,558건을 처리했다.

황세용 울산시의회 의장, 대한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울산시의회(의장 황세영)는 12월 3일 오후,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에 '2019년 대한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은 황세영 의장을 비롯하여,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 김철 회장,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황세영 의장은 울산시의회를 대표하여 특별회비를 전달하면서 “각종 구호활동과 사회봉사로 인도주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적십자사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일수록 적십자사의 역할이 중요하며, 시의회에서도 울산이 온정이 넘치는 따뜻한 도시가 되도록 앞장서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 회장은 “시민들께서 참여해 주시는 적십자회비를 기반으로 적십자사는 구호활동, 사회봉사활동, 청소년 적십자 활동을 하고 있다.”며 “12월 부터 적십자회비모금이 시작되는데 어려운 이웃에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세종시의회, 무상교복 재추진 시동

- 29일 교육안전위, 교복 지원 방법 교육감에 재량권 부여 조례 의결
- 12월 14일 제53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서 최종 처리될 예정

세종시의회가 2019학년도에 첫 시행하는 무상교복 지원 사업을 재추진하고 나섰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1월 29일 오전 의회 4층 회의실에서 무상교복의 지원 방법을 교육감이 결정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조례안은 윤형권 의원(더불어민주당·도담어진동)이 대표 발의하고, 박용희 의원(자유한국당·비례)이 조례의 부칙을 수정한 것이다.

이 조례안이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난 23일 제5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철회된 ‘무상교복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재차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2020학년부터는 현물로 교복을 지급하고, 사업 첫 해인 2019학년도 지원은 교육감이 현물 또는 현금 중 하나를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동안 논란이 된 ‘현물 지원이냐, 현금 지원이냐’에 대해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에게 재량권(시행규칙)을 줌으로써, 일선 학교에서 우려하는 혼란을 없애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윤형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는 상병헌, 박용희, 손현옥, 임채성 의원 등 교육안전위원회 의원 전원과 서금택 의장, 유철규 의원, 박성수 의원, 노종용 의원 등 9명이 참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다음달 14일 제5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송한준 의장,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에 성금 전달

- 5일 2018년 크리스마스 썸 증정식 참석 -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이 5일 ‘2018년 크리스마스 썸 증정식’에서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에 특별성금을 전달했다.

송한준 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우제찬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 지회장으로부터 크리스마스 썸 50매를 증정 받고 성금봉투를 건넸다.

송 의장은 “결핵으로 고통 받는 이웃에게는 우리의 자그마한 관심이 커다란 힘이 될 것”이라며 “올 겨울 경기도 구석구석에 따뜻함이 깃들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는 오는 2019년 1월 말까지 5억6천400만 원 모금을 목표로 2018년도 크리스마스 썸 판매를 진행 중이다. 모금액은 결핵 인식개선을 위한 범도민 홍보사업과 보건소 결핵균 검사사업 등에 쓰일 예정이다.

강원도의회 연탄배달 봉사로 이웃사랑 나눔 실천

강원도의회는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춘천시 후평1동 일대 저소득층 이웃들의 가정에 연탄을 배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도의회는 11월 초 사단법인 일촌공동체 강원본부에 연탄기금을 전달하였으며, 이와 연계한 나눔 실천 행사로 도의원과 사무처 다나눔 봉사단 100여명이 참여하여 저소득 10가구에 총 3,000장의 연탄과 함께 라면.쌀 등 생필품을 전달하였다.

이번 봉사활동은 사단법인 일촌공동체 강원본부(대표 : 김 산)를 통해 소외되고 어려운 가정 10곳을 추천 받아 진행됐다.

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으로 구성된 다나눔 봉사단은 지게와 손수레를 비롯한 운반 도구를 이용해 연탄 3,000장과 함께 생필품을 가정에 직접 배달하며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현장을 찾은 김산 일촌공동체 강원본부 대표는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을 기부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강원도의회 의장(한금석)은 “올해는 경기위축으로 소외이웃에 대한 기부심리가 많이 위축되지 않을까 염려된다.”며 “비록 도의회가 전달하는 연탄, 쌀 등 생필품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이번 작은 봉사가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강원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민 행복을 위해 지역현안 현지지찰, 민생탐방, 소외 계층 위문 등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전남도의회 도시재생연구회 전남형 도시재생 성공모델 개발 모색

-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서울로 7017 현장 방문, 현지활동 전개 -

전라남도의회 ‘도시재생연구회’(대표 최선국 의원)는 전남형 도시재생 성공모델 개발 방안 마련을 위해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서울로 7017 현장을 방문해 현지 활동을 전개했다.

도시재생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방문해 시민이 행복하고 지역이 활력 있는 도시재생특별시를 비전으로 하는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 전반을 살펴보고,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전남형 도시재생 성공모델 마련을 위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1970년에 만들어진 서울역 고가도로를 17개의 사람길로 재탄생시켜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을 촉진하는 사업인 서울로 7017 프로젝트 현장을 둘러봤다.

도시재생연구회 최선국 대표는 “이번 현지 활동은 서울시의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현장을 방문해 도시재생 사업의 잘된 점과 부족한 점을 직접 살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이를 통해 전남만의 특색 있고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재생 정책 발굴과 대안 제시 등에 접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의회 도시재생연구회는 최선국 대표를 비롯해 박문옥, 임용수, 한근석, 곽태수, 조옥현, 장세일, 최병용, 정광호, 나광국, 김정희, 유성수, 이혁제 의원 등 총 13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경상남도의회 성평등정책연구회 토론회 개최

- 2019년도 경상남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토론회 -

경상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성평등정책연구회(회장 김경영 의원, 사무국장 김경수 의원)는 11월 30일(금) 경상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의원, 유관기관, 공무원, 도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경상남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성인지 예산 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아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써 예산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양성평등 제고는 물론, 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 제도는 2013년 회계연도부터 시행되었으나 여전히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어 성인지 예산서 작성 및 심사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경남도의회는 지난 10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성인지 예산서 모니터링 및 토론회 개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성인지예산 업무협력」을 체결했다.

이날 토론회는 성인지 예산 업무협력 체결사항에 따라 김희경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상임대표가 ‘성인지예산서 NGO분석 의의 및 주요 관심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고, 이어 지역 여성단체에서 활동 중인 여성정책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서 경상남도 의회상임위원회별 성인지 예산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경영 성평등정책연구회 회장은 “오늘 토론회를 통하여 성인지예산 제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NGO활동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제·개정 법령

1. ·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2018. 11. 27.] [대통령령 제29317호, 2018. 11. 27., 제정]



공직사회의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및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발생 사실의 신고 및 조사, 그 결과에 따른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에 따른 대응방안 및 인사관리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의 신고 및 조사(제3조 및 제4조)

- 1) 국가공무원은 누구나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할 수 있음.
- 2) 임용권자 등은 신고를 받거나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되, 피해자 등이 성적 불쾌감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가해자 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나.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보호(제5조)

- 1) 임용권자 등은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파견근무, 전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2) 임용권자 등은 신고자가 그 신고를 이유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 신고자의 의사에 따라 파견근무, 전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다. 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제6조)

임용권자 등은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가해자에게 직위해제, 징계 의결 요구, 징계 의결 요구 전 승진임용 심사 대상에서의 제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라. 피해자 등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금지(제7조)

임용권자 등은 피해자 또는 신고자 등에게 징계처분, 승진임용 심사에서의 불이익 조치, 성과평가 등에서의 불이익 조치, 그 밖에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

마. 인사상 불이익 조치에 대한 신고 및 감사(제8조)

1)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과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은 피해자 등은 인사혁신처장에게 신고하거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고충에 대한 상담 신청 또는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음.

2) 인사혁신처장은 인사상 불이익 조치 여부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 인사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임용권자 등이 부담함.

2. 관광진흥법

[2018. 11. 29.] [법률 제15058호, 2017. 11. 28., 일부개정]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반드시 지정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관광 편의 시설업 지정기준의 위임 근거를 명시하며,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서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등의 지정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시설이나 외국어 안내서비스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도록 함(제6조제1항, 제6조제2항 신설).

나.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35조제1항제2호의2 신설).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018. 12. 3.] [법률 제14329호, 2016. 12. 2., 일부개정]



이 법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대상에 유치원교사 및 보육교사를 추가함으로써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질식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의 운용자로 하여금 응급환자 이송·진료 시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를 선별함으로써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진료와 감염병 확산 방지를 도모하는 한편, 응급실 과밀화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응급실 출입제한 및 체류제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며,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입의 응급의료기금에 대한 출연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대상에 유치원교사 및 보육교사를 추가함(제14조제1항제14호·제15호).
- 나. 응급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의 운용자는 응급환자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진료와 응급실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하도록 함(제31조의4).
- 다. 환자의 진료 보조에 필요한 보호자 외의 사람은 응급실 출입을 제한하고, 출입자 명단을 기록·관리하도록 함(제31조의5).
- 라.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응급실 체류시간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24시간을 초과하여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의 비율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으로 유지하여야 함(제33조의2).

- 마.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지역외상센터 등에 대하여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재정지원 중단, 제23조에 따른 응급의료수가 차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35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 바. 구급차등 운용신고 대상에 제44조제1항제4호의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자를 추가하고, 구급차등 말소 통보 및 신고제를 도입하며, 구급차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운행연한 및 운행거리 초과 운행을 금지함(제44조의2제2항, 제44조의3 및 제46조의2).
- 사. 응급의료 취약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및 처치를 위해 운용하고 있는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제46조의3).
- 아.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춰야 하는 시설 등이 해당 장비를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제47조의2제2항).
- 자. 응급구조사가 출동한 때에는 응급처치를 행하거나 응급환자를 이송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동 및 처치 기록을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구급차등 운용자는 구급차등의 운행과 관련한 운행기록대장을 작성하도록 함(제49조).
- 차.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입의 응급의료기금에 대한 출연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법률 제9305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4.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 12. 4.] [대통령령 제29318호, 2018. 12. 4., 일부개정]



신기술 관련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하고, 경쟁입찰에서 일자리창출 효과가 나타나도록 낙찰자 결정 시 일자리창출 실적도 심사하도록 하며,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발·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방식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의계약 대상 확대(제26조제1항)

- 1) 신기술 관련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 중 「과학기술기본법」 등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개발되고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은 수의계약에 의하여 제조·구매할 수 있도록 함.
- 2)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고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또는 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함.

나. 경쟁입찰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일자리창출 실적 추가 및 소액 물품입찰에 대한 최저가격 낙찰제 폐지(제42조제1항, 현행 제42조제2항 삭제)

그동안 소액 물품입찰에 대한 최저가격 낙찰제는 지나친 가격경쟁 등으로 영세한 업체가 적정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는바 이를 폐지하고,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 실질적인 일자리창출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때 계약이행능력 외에 일자리창출 실적도 심사하도록 함.

다.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도입(제43조의3 신설)

시장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 등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입찰대상자들과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등에 관한 경쟁적·기술적 대화를 통하여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등을 조정·확정하고

평가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발·구매를 촉진함.

라. 지체상금의 상한 규정(제74조제3항 신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상한을 규정하여 지체상금이 과도하게 부과되지 아니하도록 함.

마. 이의신청 대상 확대(제110조제1항제1호)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받은 불이익을 취소하거나 시정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공사 계약의 경우 7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함.

5. 치매관리법

[2018. 12. 13.] [법률 제15649호, 2018. 6. 12., 일부개정]



현행법은 "치매관리"를 치매의 예방과 진료·요양 및 조사·연구 등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치매는 의학적 치료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증상을 환자 본인 및 가족 등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치매관리"의 정의에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치매환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지원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치매환자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치매환자들이 진단에서부터 치료·요양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의료기관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는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하고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치매 등 노인성 질병에 대한 진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립요양병원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상이하게 규율되고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일관성 있는 의료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립요양병원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 "치매관리"의 정의를 현행 "치매의 예방과 진료·요양 및 조사·연구 등"에서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등"으로 확대함(제2조제3호).
- 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립요양병원 설치·운영 및 운영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운영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계약을 5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의3 신설).
- 다.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고, 치매전문병동의 설치·운영 및 시설·인력·장비 확충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의4 신설).

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2018. 12. 11.] [법률 제15899호, 2018. 12. 11., 일부개정]



언론매체의 자극적인 자살보도가 자살위험자의 자살을 유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자살보도 권고기준 및 이행확보 방안을 자살예방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자살위험자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119구조·구급대원 등에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자살자 가족 등의 자조모임을 지원하는 한편,

자살예방에 관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찰·소방서 등의 정보보유기관과 자살예방업무를 수행하는 자살예방센터 등의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살보도 권고기준 및 이행확보 방안을 자살예방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자살보도 권고기준 수립 근거를 마련함(제7조제2항제12호 및 제19조의2 신설).

나.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살예방 정책위원회 신설함(제10조의2 신설 등).

다. 경찰청 등과 자살예방센터 등 기관 간 정보 연계 체계 구축함(제12조의2 신설).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119구조·구급대원 등에게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제2항 신설).

마. 자살자 가족 등 자조(自助)모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20조제2항 신설).

7. 영유아보육법

[2018. 12. 11.] [법률 제15892호, 2018. 12. 11., 일부개정]



현재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어린이집 운영자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질 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평가 대상을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평가의 효과성을 제고하며,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나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 평가인증 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조정하도록 하여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평가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관리, 보육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어린이집 평가와 보육품질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근거, 업무 및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

그 밖에 어린이집 공익신고자 포상금 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영유아를 추가하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어린이집 운영자 등의 결격 사유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재 임의사항인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의무적 평가제로 변경하고, 평가인증방식에서 평가등급제 방식으로 전환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나 어린이집 대표자나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함(제6조 및 제30조).

나. 보육개발원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어린이집의 평가와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근거와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다.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대상에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영유아를 포함함(제28조제1항 제4호의2 신설).

라. 어린이집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공익신고자 포상금 제도의 근거를 마련함(제42조의 2제3항 및 제4항 신설).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가 시·군 및 시장·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경기도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는 경우 서류제출요구와 관련하여 시장·군수에게 해당 감사에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 등 관련)

[의견18-0250, 2018. 11. 22., 경기도의회]

【질의요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 전단에 따라 시·군 및 시장·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경기도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서류제출요구와 관련하여 시장·군수에게 해당 감사에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이 사안의 경우 경기도의회는 질의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04. 7. 27. 선고 2003추51 판결례 참조),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할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 전단에 따라 시·군 및 시장·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경기도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도지사를 거지치 아니하고 직접

시장·군수에게 해당 감사에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인데, 이러한 내용이 「지방자치법」에 위반되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 전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의회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지방의회는 해당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의 요구는 늦어도 그 서류제출일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52조에서는 같은 법 및 같은 영에 규정된 것 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서는 각각 지방의회의 감사에 관한 서류제출 요구권 및 서류제출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의회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는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경기도가 시·구 및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단체위임사무 및 기관위임사무의 감사에 관한 것이고, 그 감사대상 기관이 경기도의 사무를 위임받은 시·구 및 시장·군수라고 한다면, 해당 감사를 위한 경기도의회의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서류제출의 요구는 논리적으로 시·도의 사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시·구를 대표하는 기관이자 시·도 기관위임사무의 수임기관인 시장·군수에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경상남도 통영시 -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조례에서 정하고 있던 지방세 감면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위하여 해당 감면규정을 개정하려는 경우, 종전의 감면규정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일 이후부터 개정된 감면규정의 시행일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감면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 등 관련)

[의견18-0249, 2018. 11. 29., 경상남도 통영시]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 등에 근거하여 개별조례에서 지방세를 일정기간 동안 감면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규정(이하 “감면규정”이라 함)으로 감면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개별조례에서 정하고 있던 지방세 감면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가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감면규정을 개정하려는 경우,

가. 종전의 감면규정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일 이후부터 개정된 감면규정의 시행일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감면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나. 개정된 감면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부칙의 적절한 규정 형식은 무엇인지?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법령은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되는 것이므로 법령의 소급적용, 특히 행정법규의 소급적용은 법치주의의 원리에 반하고 개인의 권리·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며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오히려 대상자의 이익을 증진하거나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급적용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8630 판결례 참조).

이 사안의 경우, 입법공백이 발생한 기간 동안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감면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려는 것인데, 이는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이익을 줄 뿐이고 그 외의 사람들에게도 손실을 주지 않는 시혜적 소급입법에 해당하므로, 소급입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례란 새로이 시행되는 법령의 시행일을 정하는 것만으로는 개정된 법령의 적용대상과 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부칙에 두는 규정을 말하고, 경과조치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법질서를 변경하는 경우 어떤 시점부터 새로운 법령을 무조건 적용해서 기존의 법관계를 새로운 법관계로 전환시키는 것은 기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구법 사이에서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의 요구를 조화시키고 신구 법령 사이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부칙에 두는 규정을 말하는데, 신법과 구법 중 어느 법이 적용되는 지에 관한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경우라면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어 적용되는 법령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0. 29 의견제시 14-0225 참조).

이 사안의 경우, 지방세 감면의 적용대상 및 시기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서 특정한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사안부터 개정된 감면규정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칙에 적용례를 두어 종전 규정에 따른 감면규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개정된 감면규정 시행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한시적 규정인 감면규정을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개정하려는 것인바, 종전의 감면규정과 같은 내용의 감면규정을 적용례를 두어 종전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한 이상 다른 내용의 개정이 없다면 경과조치를 둘 실익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경상북도 경산시 - 경산시장은 별도의 법령 또는 조례의 근거 없이 「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3조(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만)를 근거로 자원봉사자 등에 대하여 포상으로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36조 등 관련)

[의견18-0252, 2018. 11. 30., 경상북도 경산시]

【질의요지】

「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3조에서는 경산시장은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경산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의 근거 없이 자원봉사활동기본법령 및 「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만을 근거로 자원봉사자 등에 대하여 포상으로 경산시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지?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고), 이러한 해석 원리는 조례를 해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경산시조례”라 함) 제13조에서는 “경산시장은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포상을 할 수 있다는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서는 경산시장은 우수 자원봉사자 및 단체를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예산의 범위”란 그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경산시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경산시 회계의 세출예산을 의미한다고 보이는바, 그렇다면 경산시 회계의 세출예산항목에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비용이 포함되지 않는 한 경산시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만을 근거로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포상으로 경산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39조제1항에서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의 사용료 징수를 감면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사용료 징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경산시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는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포상에 관한 규정일 뿐 경산시 공공시설의 사용료 감면에 관한 조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자원봉사자 등에 대하여 경산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산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의 근거 없이 자원봉사활동기본법령 및 「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만을 근거로 자원봉사자 등에 대하여 포상으로 경산시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MEMO

의 정 정 보

- ❖ 발 행 일 : 2018년 12월
- ❖ 발 행 처 :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 ❖ 연 락 처 : (041) 635-5124
-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nam.go.kr>